

복지후생규정 개정에 이견 없이 동의함

2018.8.21

케이티 노동조합
위원장 김 해 관



[복지후생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]

현 행	개 정	비 고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주식회사 케이티(이하 "회사"라 한다)의 상무보 및 G직, <u>C직</u> , A직 및 Sales직 직원(청원경찰 및 전문경력직을 포함한다. 이하 "직원"이라 한다)의 복지후생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주식회사 케이티(이하 "회사"라 한다)의 상무보 및 G직, A직 직원(청원경찰 및 전문경력직을 포함한다. 이하 "직원"이라 한다) 및 <u>순직자(공상으로 퇴직한 직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</u> 의 복지후생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	[개정내용] C/S 직 G 직 전환 대상자 명확화
제8조(복지후생비) ① 직원의 복지후생 증진을 위하여 지급할 수 있는 복지후생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자녀학자금(<u>대학생 자녀 제외</u>) 2~5. <생략> ② <생략>	제8조(복지후생비) ① 직원의 복지후생 증진을 위하여 지급할 수 있는 복지후생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자녀학자금 2~5. <생략> ② <생략>	[개정내용] 대학학자금 지원제 부활

※ 부칙 (2018. XX. XX)

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